

2026

원산지표시법

엠북 농수산법규

공부혁명!
mbook.kr

- ◆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◆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종합 정리
- ◆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
- ◆ 18분 완성

도서명 : 원산지표시법

ISBN : 979-11-7393-124-6

발간일 : 2025-12-01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4,000원



원산지표시법

(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,
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4)

제2장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
표시 등(p9)

제2장의2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
유통이력 관리(p24)

제3장 보칙(p26)

제4장 벌칙(p32~36)

[약어]

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장관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

시도지사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

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
시군구는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. 목적

- 농수산물/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하게 함
- 공정한 거래 유도,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

2. 정의

- 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, 식품위생법, 대외무역법, 축산물 위생관리법 따름

가. 농산물은 농업활동, 수산물은 어업/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

나. 농수산물은 농산물과 수산물

다. 원산지는 농수산물이 생산/채취/포획된 국가, 지역, 해역

라. 유통이력은 수입 농산물,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후 소비자 판매 전 유통단계별 거래명세

- 구체적 범위는

1) 양수자의 업체(상호)명, 주소, 성명(법인은 대표자 성명), 사업자등록번호(법인은

법인등록번호)

- 2) 양도 물품 명칭, 수량, 중량
- 3) 양도일
- 4) 장관 고시 사항

마.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

바. 집단급식소는 비영리 목적으로 특정

다수인에 계속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

사. 통신판매는 통신판매(전자상거래 포함) 중,

- 통신판매업자의 판매(단, 전단지를 이용한 판매 제외)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운영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

- 사이버몰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로
재화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업장

3. 다른 법률과의 관계

- 법은 농수산물,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와
수입 농산물,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
관리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

4.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

- 법에 따른 농산물/수산물, 가공품 또는
조리해 판매하는 쌀/김치류, 축산물, 수산물
등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
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(이하 심의회)에서
심의

제2장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

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

5~10조

1. 원산지 표시

가. 장관들 공동 고시 농수산물/가공품이나
산업통상부장관 공고 수입
농수산물/가공품을수입하는 자, 생산/가공해
출하/판매(통신판매 포함, 이하 같다)하는 자,
판매 목적 보관/진열하는 자는 다음에 원산지
표시 요

1) 농수산물

2) 농수산물 가공품(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
제외)

3) 농수산물 가공품(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
한정) 원료

나. 다음 표시한 때 원산지 표시한 것으로 봄

- 표준규격품
- 우수관리인증, 품질인증품, 우수천일염인증
- 천일염생산방식인증
- 친환경천일염인증
- 이력추적관리
- 지리적표시
- 원산지인증